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도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371 발의년월일: 2020년 3월 13일

발 의 자 : 송도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상훈·김화숙·이영실

박기재·김달호·김정태

노식래·김제리·고병국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○ 코로나19 감염증 등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인 고령자, 임산부,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해「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건위생을 증진시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기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보건 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신설함(안 제3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

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위해(危害) 방지를 위한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		제3조(시장의 책무)
①·② (생 략)		①·② (현행과 같음)
	<u> 〈신 설〉</u>	③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
		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보건
		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「감염병
		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「서
		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
		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
		및 위해(危害) 방지를 위한 방역에
		<u>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위해(危害) 방지를 위한 방역에 대한 시장의 책무(제3조제3항)를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선언적・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가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3. 미첚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(제3조제1항제2호)
- 안 시장의 책무(제3조제3항)에 의해,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위해(危害) 방지를 위한 방역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본 개정안에서는 시장의 책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분 석 관 이수아

28 02-2180-7944

e-mail: sua8873@seoul.go.kr